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5.



박 왕 규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 왕 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달서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청년부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의 제목을 결혼친화도시로 하고,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는 결혼축하금 지원 등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059
----------	----------

발의일자: 2023. 5. 26.
발 의 자: 박왕규, 박종길, 박정환,
황국주, 남현주, 최홍린,
이진환, 장호섭

1. 개정이유

달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달서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부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나. 제4조의 제목을 결혼친화도시로 하고,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다. 결혼축하금 지원 등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부부”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결혼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혼장려 분위기”를 “결혼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결혼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부

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
3. 결혼축하금 환수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4(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혼남녀”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말한다.</p> <p><u><신 설></u></p>	<p>제2조(정의) ① ----- ----- -----.</p> <p>② “<u>청년부부</u>”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를 말한다.</p>
<p>제4조(<u>결혼장려 분위기 조성</u>) ① 구 청장은 <u>결혼장려 분위기 조성</u>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혼남녀 <u>매칭</u> 사업 2. ~ 5. (생략) <p><u><신 설></u></p>	<p>제4조(<u>결혼친화도시 조성</u>) ① ----- ----- <u>결혼친화도시</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만남주선</u> ----- 2. ~ 5. (현행과 같음)
<p><u><신 설></u></p>	<p>제5조의2(<u>결혼축하금 지원 등</u>) ① <u>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 설>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결혼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부

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2.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
3. 결혼축하금 환수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4(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5.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차. <생략>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안 제5조의2) 등에 재정이 수반됨

3.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 동안의 대상인원 및 지원액 변동에 대해서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예측 곤란)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재원조달방안: 2023년 추경 편성

4. 비용 추계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1,440백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세출 (결혼축하금)	160	320	320	320	320	1,4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득: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2인 기준 2,419,000원 이하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결혼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부

- 연간 예상인원: 1,600(건)*20.5(%)≒320명
 - 2021년~2022년 2년 혼인건수 평균(1,600건 정도)
 - ※2021년 초혼 신혼부부 소득(70%이하) 구간별 평균: 20.5%

[출처: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 2023년 예상: 1월~6월까지 혼인신고자 160명 정도

- 청년부부 1가구 당 100만원 지원

6. 작성자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과장 이선미, 결혼장려팀장 김혜숙